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하고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423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안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 지역화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정보센터,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9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조례명이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나 환경부의 권고안에서는 “00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서에서도 알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명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조례명에 대하여는 환경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운영)제4항에서 “협의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6조(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내용이 없고 주무부서 검토의견서에도 조례 시행시 문제점으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8조(정보센터)는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산시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화학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고용부, 지자체(경기, 인천, 안산, 시흥)가 참여하여 구성된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 정보센터는 상위법령에도 설치 근거가 없고,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인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5조(정보제공 및 활용)에서 이미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훈련과 관련하여도 조례안 제17조(교육·훈련)에서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설치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므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및 환경부 권고안 각 1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의 개정 및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조건 정비(안 별표 2)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감축활동으로 추가하고,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워 허위경감의 우려가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을 삭제함.
- 부담금 대상시설물 중 “예식장”의 정의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 신설(안 제14조제2항3호)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횟수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내실화(안 제17조제2항)
-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안 제17조제5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통제수단으로 심의위원회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안 제23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정경감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7조(감축이행계획서 등)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실태 점검을 반기 1회, 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함.
- 안 제20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제2호 “승용차 함께 타기”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프로그램 이므로 경감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삭제함.
- 안 제22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은 현행 조례에서 “시장은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하여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함.
- 안 제2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부터 안 제28조(수당 등)까지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 안 [별표2]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인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요일제”, “승용차2부제”는 현행조례와 동일하나

조건, 참여율, 경감률 등을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고,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기준보다 참여율에 따른 경감률을 강화하여 적용하였는데,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이행조건, 감정률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는 시행령 별표4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과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므로 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경감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내용임.
-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감경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개정 내용은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양 구청 담당부서에서 점검시기와 방식 등이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등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내부 방침을 수립하여 양 구청에서 동일하게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 1부.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변경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준 변경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로 변경 (안 제2조)
 - 기존 : 사동 1593번지
 - 변경 : 석호공원로 1
- 위탁운영 갱신 기준 변경 (안 제8조)
 - 기존 :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변경 : 위탁운영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3. 검토의견

-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8항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등 갱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기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횟수를 제한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제4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고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및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현황 각 1부.